

전주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가단1802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1. 유한회사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수

피고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김동규, 목동호

변론종결 2020. 4. 10.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39,82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20.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1,413,6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유한회사 A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유한회사 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원고 유한회사 A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유한회사 A에게 77,827,668원, 원고 B에게 1,413,63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유한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와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김제시로부터 도급받은 'F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위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2018. 1. 29. 원고 회사와 굴삭기 5대, 덤프트럭 1대, 공기압축기 1대를, 원고 B과 덤프트럭 1대를 2018. 2. 1.부터 2018. 12. 31.까지 각각 임대하기로 하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E의 원고들에 대한 위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계약일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건설기계
원고 A의 보증서 관련					
1	2018. 1. 29.	G	26,083,830	2018. 2. 1. ~ 2019. 3. 31.	굴삭기(H
2		I	28,692,210		굴삭기(J
3		K	43,473,050		굴삭기(L
4		M	39,125,740		굴삭기(N
5		O	21,736,520		굴삭기(P
6		Q	18,021,550		덤프트럭(R
7		S	21,341,310		공기압축기(덤프트럭, T
합계			198,474,210		
원고 B의 보증서 관련					
1	2018. 1. 29.	U	21,341,310	2018. 2. 1. ~ 2019. 3. 31.	덤프트럭(V
소계			21,341,310		

라. E은 2019. 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전주지방법원 2018회합19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2, 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원고 회사는 2018. 2.부터 2018. 10. 27.까지 9개월 동안 굴삭기 5대, 덤프트럭, 공기압축기를, 원고 B은 2018. 10. 1.개월동안 덤프트럭 1대를 임대하였고, 아래와 같이 건설기계대여대금이 발생하였다.

순번	대 여 건 설 기 계	대여월(2018년)								소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원고 A의 건설기계대여대금										
1	H		13,915,000	1,210,000	3,630,000		5,445,000			24,200,000
2	J	1,210,000	7,865,000	5,500,000		7,865,000			1,815,000	24,255,000
3	L	3,465,000	7,920,000	3,960,000	3,960,000	10,395,000	9,900,000		3,465,000	43,065,000
4	N			8,415,000	4,455,000		1,320,000	2,970,000	6,435,000	23,595,000
5	P			660,000	2,420,000			9,680,000	8,470,000	21,230,000
6	R		1,320,000	2,970,000	2,310,000	3,300,000	5,280,000		1,650,000	16,830,000
7	T	385,000	5,775,000	5,775,000	2,310,000	6,930,000				21,175,000
합계										174,350,000
원고 B의 건설기계대여대금										
1	V								4,840,000	4,840,000
합계										4,840,000

E은 위 대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생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9. 5. 24. 원고 회사에게 96,522,332원, 원고 B에게 3,426,368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게 나머지 대여대금 상당의 보증금 77,827,668원, 원고 B에게 1,143,6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보증범위에 관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2조 제4호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기계의 대여가 아닌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보증서를 발급한 원고 회사 소유의 건설장비 중 R 덤프트럭과 T 공기압축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6항에 따르면 덤프트럭은 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을 건설기계로 하되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21항에 따르면 공기압축기는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5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을 건설기계로 보고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E에 대여한 장비 중 위 R 덤프트럭과 T 공기압축기는 건설기계로 등록된 기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장비들이 건설기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중 위 장비들에 관하여 발생한 대여대금은 피고의 지급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을 피고가 원고 회사나 E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위 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대상인 '고객'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받은 자를 말하는데(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 피고가 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은 피고의 조합원이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부담하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수급인)을 위한 계약으로, 그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그 조합원인 E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599 판결 참조), 수급인인 원고 회사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급부를 수령하는 수익자에 불과할 뿐이므로, 약관규제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고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6337 판결 참조). 또한 피고가

E에게 위 약관의 내용을 명시 또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보증계약의 지급보증서에는 약관을 잘 읽어 보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은 피고의 홈페이지 내 보증서발급조회 페이지 등에 게시되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약관에 대한 명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의 장비 중 R 덤프트럭과 T 공기압축기에 관하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장비에 관한 보증금을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내지 11, 1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E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여대금은 원고 회사가 174,350,000원, 원고 B이 4,840,000원이고, 원고 회사의 대여대금 중 38,005,000원(= R 덤프트럭 16,830,000원 + T 공기압축기 21,175,000원)은 피고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없으며,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96,522,332원, 원고 B에게 3,426,368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39,822,668원(= 174,350,000원 - 38,005,000원 - 96,522,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5.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1,413,632원(= 4,840,000원 - 3,426,3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1) 원고들이 김제시에게 E이 미지급한 대금을 직불해달라고 요청할 당시 김제시가 E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41,236,000원 남아 있었으므로, 위 금액은 이 사건 보증계약의 약관 제3조 제1호(보증채권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증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에 의해 피고의 보증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2) E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이 되어 E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회생절차에서 원고들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서 원고들의 채권이 감축되어 그 범위에서는 원고들이 주채무가 소멸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김제시의 원고들에 대한 대금직접지급의무는 E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김제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김제시에 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당시에는 김제시가 E에게 지급할 기성률에 따른 공사대금 662,524,700원이 있었으나, 김제시가 다른 업체와의 직불합의 등으로 우선지급할 금액인 803,056,077원을 제외하면 남는 금액이 없고, 최종 정산 결과 E에게 기성금이 과다지급되었다는 이유로 E에게 108,897,700원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김제시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발주자로부터 원고들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들의 보증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의 회생절차에서 E의 김제시에 대한 채권가압류가 취소된 사실, 원고들이 E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여 E의 회생계획안에 위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E의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원고들의 채권이 신고한 회생채권액보다 감축되어 인정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에 대하여 위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가 채무자인 때에는 그 보증한 보증인이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 내지 합의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신주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 상당의 기존채권이 변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18376 판결 등 참조). 주채무자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주채무자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하기로 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혹은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해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E이 위 회생계획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였는지, 원고들이 대여대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신주를 인수하였는지, E이 출자전환한 신주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자림